


문의	특허심사기획국	과장 신원혜	042-481-8321
	특허심사제도과	사무관 강희만	042-481-5400
 <p>2020년 3월 31일(화)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p>			

우리 기업의 브라질 특허 출원, 등록까지 11년 이상 걸리던 것이 8개월로 단축된다.

- 한-브라질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 4월 1일 시행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지식 재산권 획득 지원의 일환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브라질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 출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고, 특허청 또한 다른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을 보유한 국가(인구 약 2.1억명)로서 한국의 대(對)브라질 수출은 연간 약 49억 달러(2018년)에 이르고, 특허는 2012년 이후 2,500건 이상 출원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반면 브라질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획득할 때까지의 평균 심사 기간이 11.2년이나 소요되어 우리 기업의 신속한 권리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그러나 한-브라질 PPH가 시행되면 브라질에서 특허 등록까지의 기간이 8개월 정도로 현저하게 단축된다.
- 이에 한국 특허청은 2018년부터 브라질 특허청과 PPH 시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 협상 초기 브라질은 심사역량을 이유로 섬유 분야만 지정해 PPH 시행을 제안했으나, 한국 특허청은 대(對)브라질 주력 진출분야인 전기·전자·통신·기계 분야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하여 분야의 제한 없는 PPH 시행을 이끌어 냈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PPH 시행을 계기로 브라질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선점이 가능해져 사업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한국 특허청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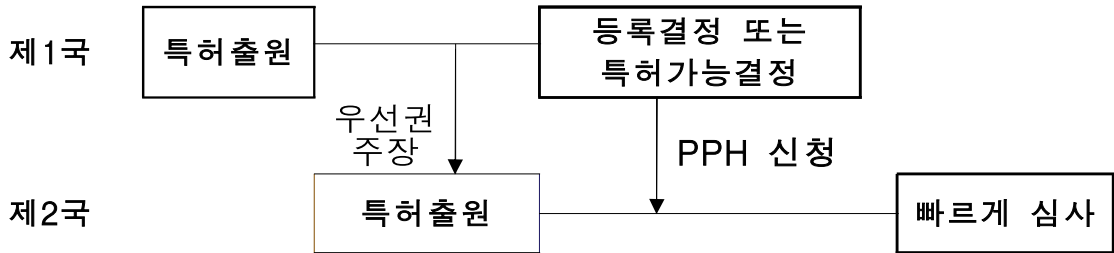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허심사제도와 강희만 사무관(☎ 042-481-54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개요

- 양국에 동일 발명으로 중복 출원된 건에 대해, 일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 의견을 받은 경우, 타국에서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

< PPH 개념도 >



□ 신청 요건

- 특허출원이 상대국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것 (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출원 포함)
- 상대국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상대국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청구항이 한개 이상 존재할 것
-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청구범위를 감축할 것

※ 제출 서류

- ① 상대국 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청구범위 및 「그 번역문」
- ② 「상대국 특허청이 발부한 심사관련 통지서」 및 「그 번역문」
- ③ 상기 심사관련 통지서에 인용된 선행기술
- ④ 한국 특허출원과 상대국 특허출원의 청구항 대응관계 설명표

□ 시행현황

- '20.04월 기준 전세계 총 34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시행 중*

* (시행국은 30개, 국제기구는 3개)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유럽특허청(EPO), 오스트리아,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유라시아, 페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노르딕 특허기구, 비세그라드 특허기구 등